

# 심판 자격 관리·운영 규정

제정 2024. 07. 02.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(이하 “연맹“이라 한다)의 오리엔티어링 심판에 대한 자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심판의 정의)** 심판이라 함은 2급 이상의 오리엔티어링 지도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검정시험에 합격하여 심판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.

**제3조(직무내용)** 심판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연맹의 공인대회 및 비공인대회에서의 경기심판, 심판 양성교육 강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.

## 제 2 장 심판 양성교육

**제4조(교육과정)** ① 심판양성 교육과정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.

② 신규교육은 심판 자격증을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.

③ 보수교육은 심판자격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심판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다.

**제5조(시행자)** ① 심판 양성교육은 연맹 주관으로 시행하되 시행자는 교육위원회로 한다.

② 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심판 양성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관리·운영 업무를 담당한다.

1. 교육과정의 계획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

2. 교육장 확보, 교육강사 위촉, 참가자 모집, 안내에 관한 사항

3. 교육과정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

③ 사무처는 시행자의 업무를 지원하고 보조한다.

**제6조(교육강사 위촉)** ① 교육과정에는 2명 이상의 교육강사를 위촉해야 한다.

① 교육강사는 오리엔티어링 지도사 1급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, 심판자격 보유자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.

**제7조(수강자격)** ① 신규교육 수강자격은 오리엔티어링 지도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

를 대상으로 한다.

② 보수교육 수강자격은 심판자격 보유자로서 자격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.

**제8조(교육과목 및 이수시간)** ① 신규교육의 교육과목 및 이수시간은 다음 각호의 예시를 참고하여 12시간 이상을 운영한다.

1. 심판 제도의 이해(1h)
2. 스포츠인권교육-성폭력 & 도핑 예방교육 포함(2h)
3. 경기규정(2h)
4. 대회(경기) 운영(1h)
5. 코스 설정의 이해와 실습(2h)
6. 코스 설치 및 오류 확인(2h)
7. 심판사례 및 심판회의 실습(1h)
8. 오리엔티어링 최근 동향(1h)

② 보수교육의 교육과목 및 이수시간은 다음 각호의 예시를 참고하여 6시간 이상을 운영한다.

1. 스포츠인권교육(성폭력&도핑예방 포함)(2h)
2. 코스 설치 및 오류 확인(2h)
3. 심판사례 및 심판회의 실습(1h)
4. 오리엔티어링 최근 동향(1h)

② 이수시간은 최소 이수시간을 정한 것이며 필요에 따라 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.

③ 교육과정 수강생은 각 교육과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이수시간의 90% 이상을 출석해야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.

**제9조(수강료)** ① 신규교육 수강료는 15만원으로 한다,

② 보수교육 수강료는 7만원으로 한다.

### 제 3 장 자격검정

**제10조(검정시행)** ① 시행자는 신규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심판 자격검정을 실시한다.

② 자격검정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③ 자격검정 수수료는 2만원으로 한다.

**제11조(합격기준)** 자격검정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.

## 제 4 장 자격 취득 및 관리

**제12조(자격취득)** ① 심판 자격검정에 합격한 뒤, 본 연맹에 등록신청서(별지1 서식)를 제출하고 등록비 3만원을 납부함으로써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.

②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나 검정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응시하여야 한다. 2년이 경과되면 교육과정 수료 효력이 상실된다.

③ 검정시험에 합격한 뒤, 1년 이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교육과정 수료 및 검정시험 합격 효력이 상실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만이 연맹의 심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.

**제13조(자격증 교부)** ① 연맹은 심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심판 자격증을 교부한다.

② 심판 자격증을 분실, 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이 있을 때는 재교부 받을 수 있다.

**제14조(유효기간)** 심판 자격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되, 자격이 만료되는 해의 마지막 날(12월 31일)까지로 한다.

**제15조(자격정지)**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.

1. 해당 자격의 유효기간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
2.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9조에 해당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

**제16조(자격상실)**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.

1.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자격이 정지된 이후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
2.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9조에 해당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자격취소 징계를 받은 경우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①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심판 자격을 취득한 자로 오리엔티어링 지도사 3급 자격 보유자는 2급 자격 취득 후 보수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심판자격을 갱신할 수 있다.

②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심판 자격을 취득한 자로 오리엔티어링 지도사 2급 이상 자격 보유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심판자격을 갱신할 수 있다.

- ③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심판 자격을 취득한 자로 규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.
- ④ 2024년 1월 심판 자격을 취득한 자는 유효기간을 4년으로 변경하여 자격증을 재발급한다.

